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

제출년월일
제출자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95.12.29 법률제5113호)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감면신청을 명문화하는등 현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 30일이상 시설물 미사용 기간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제6조제3항)
- 감면신청의 적용시기를 다음 부과기간부터 적용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감면사유 발생시 당해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
(제6조제4항)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분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대도시와 동일하게 적용되던 계수를 도심지역·외곽지역 구분없이 도시 규모 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현행보다 하향 조정되도록 함. (별표1)

3.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

- 붙임 1.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기타참고자료(근거법령 등)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증 “법 제3조”를 “법 제2조제3의2호 각목”으로 한다.

제3조증 “영 제9조의6”을 “영 제33조”로 하고, “영 제9조의7각호의1”을 “영 제34조”로 한다.

제4조증 “영 제9조의8제2항”을 “영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증 “영 제9조의15제2항”을 “영 제38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증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적용시기는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영 제9조의10 규정에 의한다”를 “부과 기준일 및 납기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실제 미사용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증 “제5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1”“별지1호서식”“별지3호서식”“별지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u> | 제2조(적용범위)---“법”제2조 제3의2호 <u>각목</u> ----- ----- ----- |
| 제3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영”제9조의6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영”제9조의7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영”제33조----- ----- (“영”제34조----- ----- ----- ----- |
| 제4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영”제9조의8 제2항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교통유발계수는 “별표1”과 같다. 1~2(생략) | 제4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영”제35조 제2항----- ----- ----- 1~2(현행과 같음) |
| 제6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제9조의15 제2항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생략) ② (생략) (신 설) | 제6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제38조제5항----- ----- ----- 1~3(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실제 미사용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③ 시장은 <u>제2항</u>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감여부를 현지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u>적용시기는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u>. <u>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영”제9조의 10 규정에 의한다.</u></p> | <p>④ --- <u>제2항 및 제3항</u>----- ----- ----- <u>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영”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u></p> |
| <p>제7조(사후관리) <u>제5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경감계획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p>제7조(사후관리) <u>제6조제4항</u>----- ----- ----- ----- -----</p> |

<별표 1>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관련)

| 구분 | 대 분류 | 세 분류 | 계수 |
|----|---------|---|------|
| 1 | 근린생활시설 |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 1.12 |
| | | 나. 일반음식점 | 1.48 |
| | | 다. 골프연습장 | 2.12 |
| | | 라. 정구장, 헬스크립, 블링장, 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 1.06 |
| | |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근린생활시설 | 1.02 |
| 2 | 의료 시설 | 가. 종합병원 | 0.93 |
| | |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 0.72 |
| 3 | 교육연구시설 |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제외) | 0.78 |
| | | 나.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포함) | 0.74 |
| 4 | 운동 시설 | 가.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0.96 |
| 5 | 업무 시설 | 가. 일반업무시설 | 0.82 |
| 6 | 숙박 시설 | 가. 관광숙박시설 | 0.77 |
| | | 나. 일반숙박시설 | 0.77 |
| 7 | 판매 시설 | 가. 도매시장 | 0.94 |
| | | 나.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 2.67 |
| | | 다. 소매시장, 상점 | 1.12 |
| 8 | 위락 시설 | 가. 유흥주점, 균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 1.16 |
| | | 나. 특수목욕탕 | 1.02 |
| 9 | 관람집회시설 | 가.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비스장 | 1.12 |
| | | 나.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 1.49 |
| | |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 1.12 |
| 10 | 전시 시설 | 가.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2.03 |
| | | 나.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0.55 |
| 11 | 공장 시설 | | 0.24 |
| 12 | 창고저장시설 | 가. 창고, 하역장시설 | 0.30 |
| 13 | 운수 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2.76 |
| | | 나. 철도역사 | 2.46 |
| | |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 1.14 |
| 14 | 자동차관련시설 |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 1.04 |
| | |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 0.20 |
| 15 | 방송통신시설 | 가. 방송국, 텔영소 | 1.00 |
| | | 나. 전신전화국 | 0.67 |
| 16 | 관광휴게시설 | 가.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 1.71 |
| 17 | 기타 | | 0.71 |

※ 비 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한 경우는 그에 의한다.
2. 별표1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않은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앞쪽)

[별지 제1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년도 제 호

상 호 :

성 명 :

시설물소재지 :

과세기관번호 :

남부 기한 : 년 월 일

교부 장소 : 시중은행, 우체국

| 납기내 년 월 일까지 | 가산금 | 납기후 년 월 일까지 |
|----------------|-----|----------------|
| 원 | 원 | 원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천시장

(수납기관 보관용)

교통유발부담금 영수필통지서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년도 제 호

상 호 :

성 명 :

시설물소재지 :

과세기관번호 :

납부 기한 : 년 월 일

| 납기내 년 월 일까지 | 가산금 | 납기후 년 월 일까지 |
|----------------|-----|----------------|
| 원 | 원 | 원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정수관 수납인

(시 통보용)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년도 제 호

상 호 :

성 명 :

시설물소재지 :

과세기관번호 :

납부 기한 : 년 월 일

| 납기내 년 월 일까지 | 가산금 | 납기후 년 월 일까지 |
|----------------|-----|----------------|
| 원 | 원 | 원 |

위 금액을 납부고지 및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정수관 수납인

(납부의무자 보관용)

(뒷 쪽)

○ 유의사항

1. 납기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애에 의하여 강제징수 당하게 됩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단일용도시설물 :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복합용도시설물 : 시설물의 용도별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
7.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 당해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고 관할관청에 감면신청한 경우
 - 시설물소유자가 교통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사업비를 부담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관할관청에 신고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서

| | | | | |
|----------------|---------|-----------|-------|----------------|
| 신청인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전화 : -) | | |
| 감면대상 시설 | ④시설명 | ⑤용도 | ⑥연면적 | m ² |
| | ⑦소재지 | | | |
| | ⑧평가등급 | ⑨감면기간 | ⑩감면비율 | |
| ⑪ 교통개선대책 이행 내용 | | | | |
| 주요개선대책의 규모 | 준공검사 내용 | | 검사 일 | |
| | |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1. 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 사본 1부 | |
| 2.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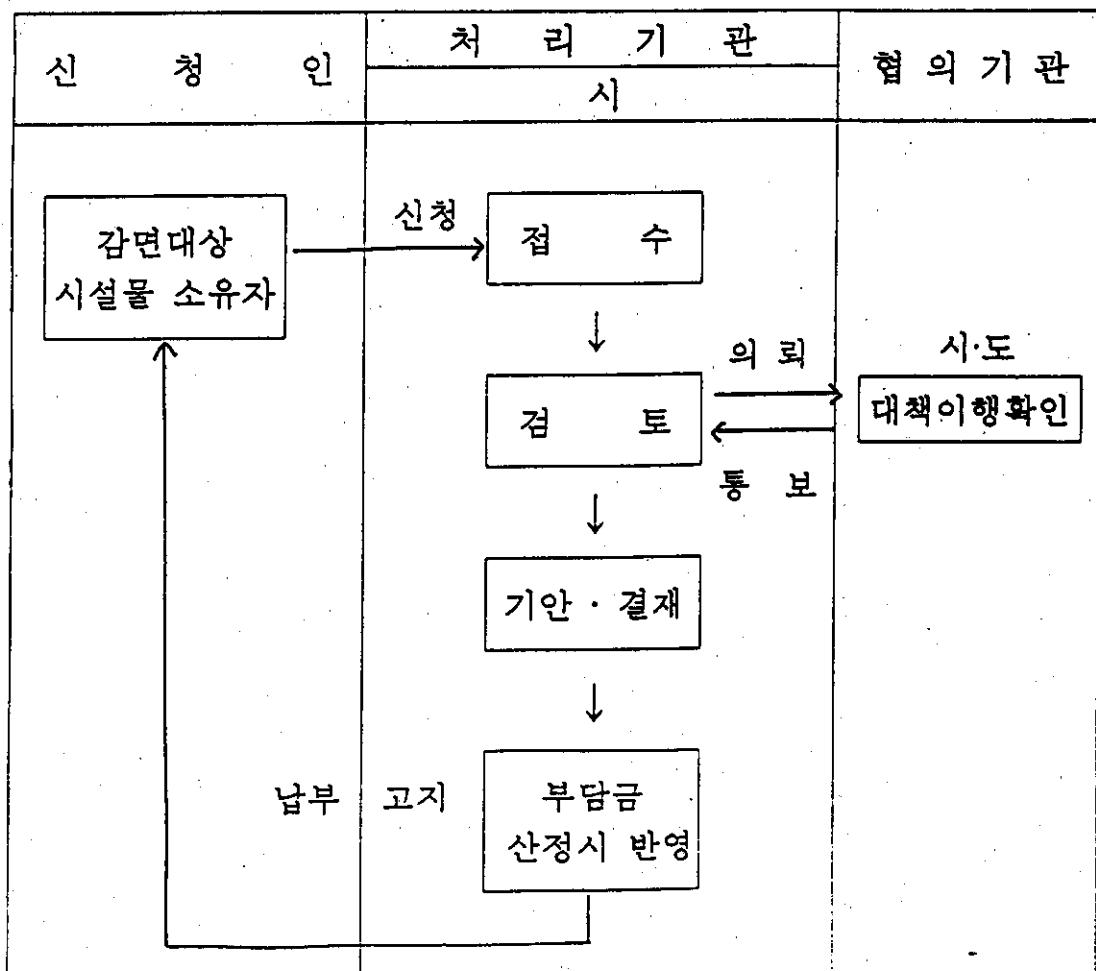
본 신청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뒷쪽)

※ 기재방법

- ③란은 시설물의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감면대상 시설물이 소재한 위치를 기재합니다.
⑧⑨⑩란은 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에 명기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 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과 준공검사시 확인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시설물미사용신고서

| | | | | | | |
|-------------------------|------|-----------|------|----------------|--|--|
| 신청인 | ①성명 |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전화 : -) | | | | |
| 부과대상 시설 | ④시설명 | ⑤용도 | ⑥연면적 | m ² | | |
| | ⑦소재지 | | | | | |
| 미사용내용 | | | | | | |
| ⑧미사용면적(m ²) | ⑨용도 | ⑩기간 | ⑪사유 | | | |
| | | | |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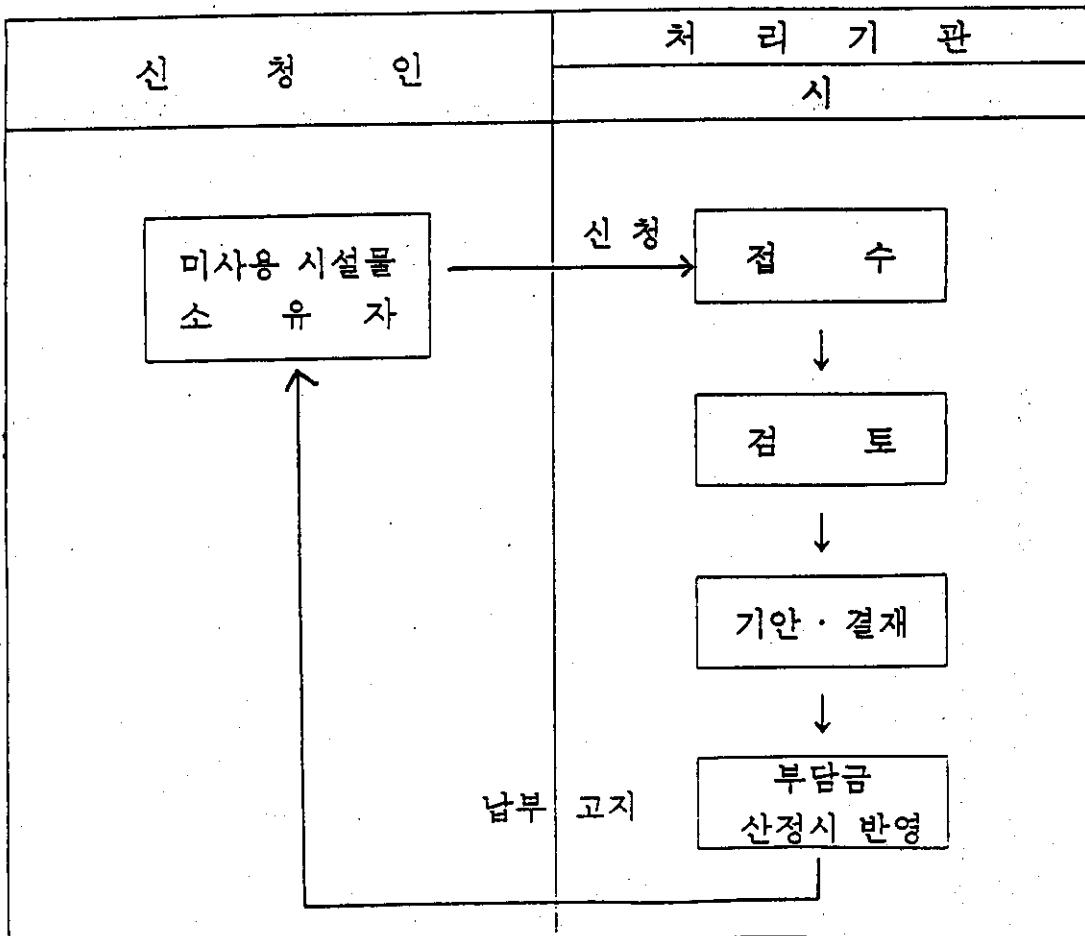
| |
|-----|
| 수수료 |
| 없음 |

(뒷쪽)

※ 기재방법

- ①란은 신고당시 시설물의 소유자를 기재합니다.
- ⑦란은 미사용 시설물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⑧란은 당해 시설물의 전체면적대비 미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대시설 또는 공유시설 면적을 분담하여야 하며 이경우 그 내용을 ()에 부기합니다.
- ⑪란은 6하원칙에 의거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都市交通整備促進法(1992.12.8)
(法律第4533號全文改正)

改正 1994.12.22 法律第4796號(都農複合形態의 市設置에 따른行政特例등에 관한
法律)

1995.1.5 法律第4927號(交通安全公團法)

1995.12.6 法律第4980號(基金管理基本法)

1995.12.29 法律第5113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交通施設의 整備를 촉진하고 交通手段 및 交通體系를 효
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都市交通의 원활한 疏通과 交通편의의 增進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1. “交通手段”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地點에서 다른 地點으로 移動하는
데 이용되는 버스·列車(都市鐵道의 列車를 포함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
는 連搬手段을 말한다.
2. “交通施設”이라 함은 交通手段의 運行에 필요한 道路·駐車場·旅客自動車터
미널·貨物터미널·鐵道·空港·港灣 및 換乘施設등을 말한다.
3. “換乘施設”이라 함은 交通手段의 利用者가 다른 交通手段를 이용하는데 편리
하게 하기 위하여 鐵道驛·停留所·旅客自動車터미널 및 貨物터미널등의 機能
을 複合的으로 제공하는 施設을 말한다.
- 3의 2. “都市交通整備地域”이라 함은 다음 각目的 地域을 말한다.
 - 가. 常住人口 10萬이상의 都市(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邑·面地域을
제외한 地域의 人口가 10萬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그 都市와 같은 交通
生活圈에 있는 地域(이하 “交通圈域”이라 한다)
 - 나. 建設交通部長官이 都市交通改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內務
部長官과 協議한 후 中央都市交通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告示
한 都市 및 그 交通圈域
4. “中心都市”라 함은 都市交通整備地域안에서 交通의 中心이 되는 都市를 말한
다.
5. “交通體系管理”라 함은 交通施設의 效率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交通影響評價”라 함은 大量의 交通需要를 誘發할 우려가 있거나 大量의 交

제31조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19조의10제 1 항제 3 호에서 "기타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승용차함께타기(이하 "함께타기"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주차수요관리의 시행
3.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4.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5. 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6.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7. 기타 이에 준하는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방안의 시행

제32조 (교통혼잡지역의 지정등)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혼잡지역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하루종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평균통행속도 또는 평균정지지체시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평균통행속도가 별표 5 가록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차량당 평균정지지체시간이 별표 5 나록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시장동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회도로의 확보
2.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3. 교통지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징수방식

제33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21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을 말하되, 그 상주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시설물로 한다. 다만,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이미만인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

적의 합계(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을 한다.

③제 1 항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

④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동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이상의 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⑥제 5 항에서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 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4조 (부담금 비부과대상) ①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의 시설물을 유상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2. 주거용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주차장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6. 종교시설
7.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9.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10.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2. 동일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및 등표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시설
1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
15.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② 제1항 각호의 시설물을 당해 시설물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부담금 부과기준) ① 단일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부담금} = \text{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 \times \text{단위부담금} \times \text{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의 산식 중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하되, 시장등이 지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장등은 당해 지역안의 각 시설물의 용도별 교통유발원단위를 조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 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복합용도인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할한 금액으로 한다.

⑥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계산시 소속점 두자리미만은
절사한다.

제37조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부과기준중에 시설물의 철거·멸실등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준중 최종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③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 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중 100제곱미터미만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부담금의 감면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당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등 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과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및 심의결과 재평가의 사유가 된 교통문제발생의 원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있거나 재평가에 따라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등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법 제19조의 3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분담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절차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장구역등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는 시장등이 조례로 정한다.

③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시장등은 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차의 교통량을 100분의 20이상 감축하는 차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70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⑤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전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 | | |
|--|------------------|----------------------------------|
| (바) 교통영향평가서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저해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용역을 받은 때 | 법 제19조의6 제 6호 | 1차 : 업무정지 3월, 2차 : 업무정지 9월 |
| 4.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전문인력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때 | 법 제19조의8 제 5호 | 1차 : 업무정지 1월, 2차 : 업무정지 3월 |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법 제19조의8 제 6호 | 1차 : 경고, 2차 : 업무정지 6월, 3차 : 등록취소 |

(별표 5)

혼잡수준 결정기준(제32조제 1 항관련)

가. 평균통행속도에 의한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단위 : km/h)

| 편도 4 차로 이상 | 편도 3 차로 이하 |
|------------|------------|
| < 20 | < 16 |

나. 차량당 평균정지지체시간에 의한 교차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단위 : 초)

| 신호교차로 | 무신호교차로 |
|-------|--------|
| 60 ≤ | 45 ≤ |

※ 참고 : 차량당 평균정지지체시간이란 도로용량편람(건설교통부, 1992) 395~399

쪽의 차량당 평균정지지체를 말한다.

(별표 6)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5조제 3 항관련)

| 구분 | 대분류 | 세구분 | 세분류 | 도시규모(단위 : 인) | | | |
|----|--------|-----|---------------|--------------|-------------|------------|------------|
| | | | | 100만 이상 | 50만~100만 미만 | 30만~50만 미만 | 10만~30만 미만 |
| 1 | 근린생활시설 | 가 | 슈퍼마켓, 일용 품소매점 | 1.68 | 1.66 | 1.64 | 1.12 |
| | | 나 | 일반음식점 | 2.56 | 2.48 | 1.59 | 1.48 |

| | | | | | | | |
|---|--------|---|---|------|------|------|------|
| | | 다 | 풀프연습장 | 5.00 | 4.80 | 2.40 | 2.12 |
| | | 라 | 정구장, 헬스크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풀프장 | 1.80 | 1.46 | 1.32 | 1.06 |
| | | 마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 1.44 | 1.16 | 1.02 | 1.02 |
| 2 | 의료시설 | 가 | 종합병원 | 1.28 | 1.04 | 0.93 | 0.93 |
| | | 나 |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 1.34 | 1.08 | 0.88 | 0.72 |
| 3 | 교육연구시설 | 가 |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학원 제외) | 1.42 | 1.16 | 1.00 | 0.78 |
| | | 나 |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출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 0.90 | 0.82 | 0.74 | 0.74 |
| 4 | 운동시설 | 가 |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1.04 | 1.12 | 0.96 | 0.96 |
| 5 | 업무시설 | 가 | 일반업무시설 | 1.20 | 1.00 | 0.82 | 0.82 |
| 6 | 숙박시설 | 가 | 관광숙박시설 | 2.62 | 2.23 | 1.81 | 0.77 |
| | | 나 | 일반숙박시설 | 1.16 | 0.87 | 0.79 | 0.77 |
| 7 | 판매시설 | 가 | 도매시장 | 1.81 | 1.77 | 1.63 | 0.94 |
| | | 나 |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 5.46 | 4.48 | 2.67 | 2.67 |
| | | 다 | 소매시장, 상점 | 1.68 | 1.66 | 1.64 | 1.12 |

| | | | | | | | |
|----|---------|---|---|------|------|------|------|
| 8 | 의약시설 | 가 | 유동주점, 근린 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 2.56 | 2.48 | 1.40 | 1.16 |
| | | 나 | 특수목욕탕 | 1.44 | 1.16 | 1.02 | 1.02 |
| 9 | 관람집회 시설 | 가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비스장 | 3.55 | 2.38 | 1.94 | 1.12 |
| | | 나 | 집회장: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 4.16 | 3.43 | 2.39 | 1.49 |
| | | 다 |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 3.55 | 2.38 | 1.94 | 1.12 |
| 10 | 전시시설 | 가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3.55 | 2.42 | 2.16 | 2.03 |
| | | 나 |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0.72 | 0.62 | 0.55 | 0.55 |
| 11 | 공장시설 | | | 0.47 | 0.43 | 0.31 | 0.24 |
| 12 | 창고저장 시설 | | 창고, 하역장시설 | 0.61 | 0.50 | 0.37 | 0.30 |
| 13 | 운수시설 | 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5.56 | 4.34 | 3.92 | 2.76 |
| | | 나 | 철도역사 | 4.13 | 3.76 | 3.11 | 2.46 |
| | | 다 | 공항시설, 항만 시설 | 1.81 | 1.14 | 1.14 | 1.14 |

| | | | | | | | |
|----|-------------|---|--|------|------|------|------|
| 14 | 자동차관 련시설 | 가 | 매매장, 정비공 장, 세차장, 폐 차장 | 1.49 | 1.18 | 1.04 | 1.04 |
| | | 나 | 운전학원, 정비 학원 | 0.88 | 0.86 | 0.67 | 0.20 |
| 15 | 방송통신 시설 | 가 | 방송국, 촬영소 | 1.89 | 1.20 | 1.18 | 1.00 |
| | | 나 | 전신전화국 | 1.00 | 0.82 | 0.67 | 0.67 |
| 16 | 관광휴게 시설 | | 공원, 유원지 또 는 관광지에 부 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 회관, 관망탑 | 3.10 | 2.68 | 2.14 | 1.71 |
| 17 | 기타 | | | 1.20 | 1.00 | 0.82 | 0.71 |

※ 비 고

-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6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한 경우는 그에 의한다.
- 별표 6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은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 도시여건상 별표 6의 유발계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는 도시를 관할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의 유발계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7)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준(제38조제1항관련)

1. 사업지의 지역등급

- 1등급(1.0) : 진출입구가 1~2개(20m~25m)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m를 초과 한 경우
- 2등급(2.0) : 진출입구가 대로 2개(30m~35m)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m를 초과 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전문인력업무정지처분대장

| ① 교통영향 평가 분명 | ② 성명 | ③ 주민등록 번호 | ④ 자격 사항 | ⑤ 정지 기간 | ⑥ 처분 사유 | ⑦ 관련근거 및 처분일 | 기록자 ⑨ |
|--------------|------|-----------|---------|---------|---------|--------------|-------|
| | | | | | | | |

33330-02711비

297mm × 210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 ※ 비고 : ①란은 업무정지를 받을 당시의 소속한 교통영향평가기관장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소지 자격 및 경력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구체적인 개시연·월·일부터 만료연·월·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⑥란은 부실판정사유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교통유발부담금감면신청서

| | | |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소 | (전화: -) | |
| 감면대상 시설 | ④ 시설명 | ⑤ 용도 | ⑥ 연면적 m ² |
| | ⑦ 소재지 | | |
| | ⑧ 평가등급 | ⑨ 감면기간 | ⑩ 감면비율 |
| ⑪ 교통개선대책이행 내용 | | | |
| 주요개선대책의 규모 | 준공검사 내용 | 점사일 | |
| |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시장

|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
| 1. 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 사본 1부 | |
| 2.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

본 신청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3330-02811번
96. 6. 29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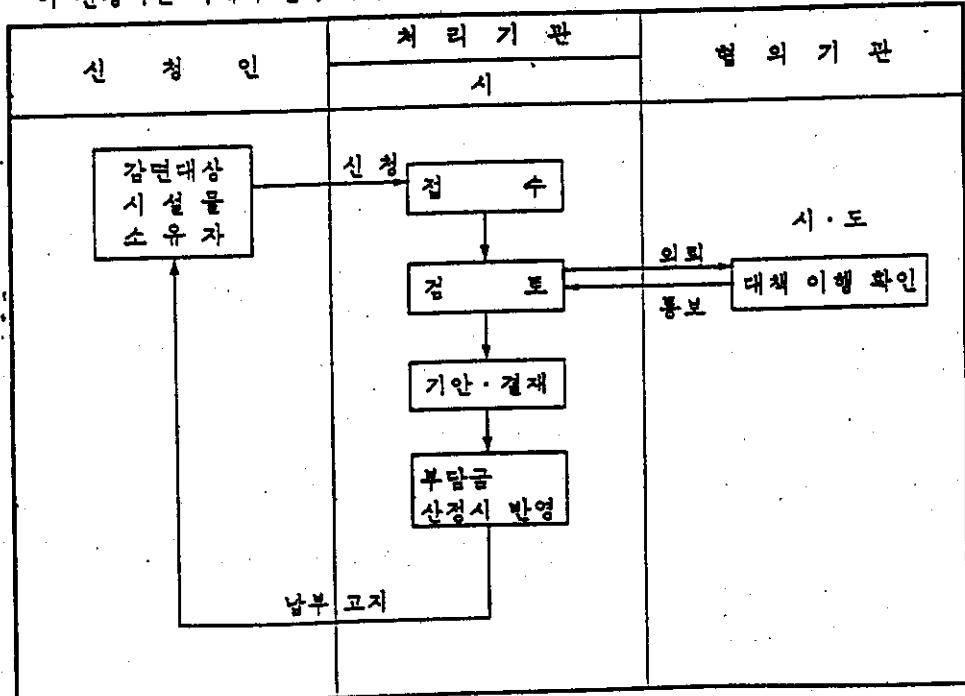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 기재방법

(뒷 쪽)

- ③란은 시설물의 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⑦란은 답변대상 시설물이 소재한 위치를 기재합니다.
- ⑧, ⑨, ⑩란은 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에 명기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⑪란은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과 준공검사시 확인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주 76)

(별지 제15호서식)

(일 쪽)

| 시설물미사용신고서 | | | |
|--|------|---------------------|-------------------------------|
| 신청인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 | |
| | ③주소 | | |
| 부과대상 | ④시설명 | ⑤용도 | ⑥연면적 ^{m²} |
| 시설물 | ⑦소재지 | | |
| 미사용내용 | | | |
| ⑧미사용면적(m ²) | ⑨용도 | ⑩기간 | ⑪사유 |
| 도시교통정책법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시장 | | | |
| ※ 구비서류: 시설물의 미사용 증거자료 1부 | | | 수수료 없음 |

33330-02911번

96. 6. 29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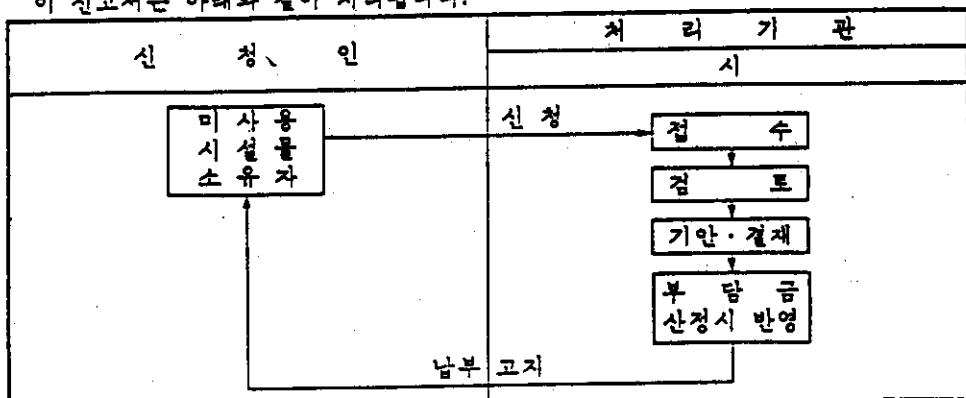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 기재방법

(뒷 쪽)

- ①한은 신고당시 시설물의 소유자를 기재합니다.
- ⑦한은 미사용시설을 소재지 기재합니다.
- ⑧한은 당해 시설물의 전체면적대비 미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대시설 또는 공유시설면적을 분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에 부기합니다.
- ⑪한은 6학원칙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후 76)

(앞 쪽)

[별지 제16호서식]

(수 76)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년도 제 호

상 호:

성 명:

시설물소재지:

과세기관번호:

납부기한: 년 월 일

교부장소: 시중은행, 우체국

| 납기내년월일까지 | 가산금 | 납기후년월일까지 |
|----------|-----|----------|
| 원 | 원 | 원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정 수납인

(수납기관 보관용)

교통유발부담금 임수필통지서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년도 제 호

상 호:

성 명:

시설물소재지:

과세기관번호:

납부기한: 년 월 일

| 납기내년월일까지 | 가산금 | 납기후년월일까지 |
|----------|-----|----------|
| 원 | 원 | 원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정수관 수납인

(시 통보용)

교통유발부담금 남부고지서 및 임수증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년도 제 호

상 호:

성 명:

시설물소재지:

과세기관번호:

납부기한: 년 월 일

| 납기내년월일까지 | 가산금 | 납기후년월일까지 |
|----------|-----|----------|
| 원 | 원 | 원 |

위 금액을 남부고지 및 임수합니다.

년 월 일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정수관 수납인

(남부의무자 보관용)

33330-01011일

96. 6. 29 개정

297mm x 210mm
(신문용지 54g/ml)

- 유의사항
1. 납기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시교통정책법 제2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당하게 됩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기미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차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차분이 있음을 한날부터 90일, 차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차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단일용도시설물 : 시설물의 기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복합용도 시설물 :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
7.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 당해 심의결정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고 관할관청에 감면신청한 경우
- 시설물소유자가 교통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사업비를 부담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폐·폐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관할관청에 신고한 경우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1996. 6. 19] [조례 제1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 역 내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영" 제9조의6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영" 제9조의7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심지역 : 당해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외곽지역 : 당해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제4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영" 제9조의8제2항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교통유발계수는 "별표1"과 같다.

1. 도심지역 :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2. 외곽지역 :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280원으로 한다.

제5조(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의 범위) 이 조례에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범위는 제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9조의15제2항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시설물 : "별표1"의 용도별 시설물로서 제3조의 부과대상 규모
2. 경감내용
 - 가. 통근버스 운영
 - 나. 함께 타기(카풀제) 운영
 - 다. 주차장 유료화
 - 라. 승용차 부제 운행
 - 마.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
3. 경감비율 : 제1항 제2호의 내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자의 교통량을 100분의20이상 감축한 자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4편 사회환경 제5장 교통행정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경감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감여부를 현지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용시기는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영” 제9조의 10 규정에 의한다.

제7조(사후관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경감계획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이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早
起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당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영” 제9조의10 규정에 의하
여(용례) 부과기준일 1995년 8월 1일이후 개시하는 부과기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4조 관련)

| 용도 | 지역 | 도심지 | 외곽지역 |
|--------------------------------------|----|------|------|
| 1. 병원 | | 1.22 | 0.82 |
| 2. 업무시설 | | 0.82 | 0.61 |
| 3. 관람집회시설 | | 3.04 | 2.03 |
| 가. 공영장·집회장(예식장을 제외 한다)·관람장 | | 3.65 | 2.44 |
| 나. 예식장 | | 3.04 | 2.03 |
| 4. 전시시설 | | | |
| 5. 판매시설 | | | |
| 가. 도매·소매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를 제외한다)·상점 | | 4.45 | 2.67 |
| 나. 백화점·쇼핑센타 | | 1.22 | 0.82 |
| 6. 숙박시설 | | 4.05 | 2.44 |
| 7. 위탁시설 | | 1.22 | 0.82 |
| 8. 자동차 관련시설 | | 0.82 | 0.61 |
| 9. 방송·통신시설 | | 0.40 | 0.24 |
| 10. 공장 | | | |
| 11. 교육연구시설 | | | |
| 가. 교육원·직원훈련소·학원 | | 1.52 | 1.21 |
| 나. 연구소·도서관 | | 0.82 | 0.61 |
| 12. 창고시설·저장시설 | | 0.61 | 0.30 |
| 13. 관광휴게시설 | | 3.04 | 2.03 |
| 14. 운수시설 | | 3.61 | 2.80 |
| 15. 운동시설(골프연습장·헬스크립을 포함한다) | | 2.07 | 1.60 |
| 16. 일반음식점(면적 1,000평 이상인 음식점에 한한다) | | 1.22 | 0.82 |
| 17. 기타 | | 0.82 | 0.61 |

※ 비 고

1.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부표에 의한다.
2. 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의 구분은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시설물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4.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8 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에 의거 계산한다.

○ 단일용도시설물

$$\text{부담금} = \text{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 \times \text{단위부담금} \times \text{교통유발계수}$$

○ 복합용도시설물

$$\text{부담금} = \text{시설물의 용도별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 \times \text{단위부담금} \times \text{교통유발계수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별지 제1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증명서 | | | |
|-------------------|---------|---------|--------|
| 납부의무자 | ①상호 | | ④년도 |
| | ②성명 | | |
| | ③시설물소재지 | | ⑤제호 |
| ⑥년도분 | | | |
| ⑦부과기간 및코드번호 | | ⑧납부기한 | |
| 부 담 금 내 역 | | | |
| ⑨총계 | ⑩납기내금액 | ⑪납기후가산금 | ⑫미수부담금 |
| 원 | 원 | 원 | 원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수납일부인 | | 시장 귀하 | |

(수납기관보관용)

| 교통유발부담금 영수증명서 | | | |
|---------------|---------|---------|--------|
| 납부의무자 | ①상호 | | ④년도 |
| | ②성명 | | |
| | ③시설물소재지 | | ⑤제호 |
| ⑥년도분 | | | |
| ⑦부과기간 및코드번호 | | ⑧납부기한 | |
| 부 담 금 내 역 | | | |
| ⑨총계 | ⑩납기내금액 | ⑪납기후가산금 | ⑫미수부담금 |
| 원 | 원 | 원 | 원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수납일부인 | | 시장 귀하 | |

(시동보증)

| 교통유발부담금 영수증 | | | |
|--------------|---------|---------|--------|
| 납부의무자 | ①상호 | | ④년도 |
| | ②성명 | | |
| | ③시설물소재지 | | ⑤제호 |
| ⑥년도분 | | | |
| ⑦부과기간 및코드번호 | | ⑧납부기한 | |
| 부 담 금 내 역 | | | |
| ⑨총계 | ⑩납기내금액 | ⑪납기후가산금 | ⑫미수부담금 |
| 원 | 원 | 원 | 원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수납일부인 | | 시장 귀하 | |

(납부자보관용)

768mm × 190mm
(신문용지 54g/m²)

○ 유의사항

1. 납기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치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당하게 됩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은 세납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금이 기재된 납부의무자는 미수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바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그 다음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치분이 있음을 안내부터 60일, 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유권유하여 제3항에 행정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단일용도 시설물: 시설물의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 복합용도 시설물: 시설물의 용도별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

[별지 제3호 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처리기한 : 7일)

| | | |
|-------|--------------------|---|
| 납부의무자 | 주 소 | |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시설물 | 상 호 (명 칭) | |
| | 소재지 | |
| | 경감 대상 | |
| | 면적(층 바닥 면적의 합계) | |
| | (해당번호에 0 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근버스 운영 2. 함께 타기(카풀제) 운영 3. 주차장 유료화 4. 부제운행 5.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 6. 기타 |

제천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경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제천시장 구하

| | | |
|------|------------|-----|
| 구비서류 | 경감신청계획서 1부 | 수수료 |
| | | 없 습 |